

1. 개정이유

대하천 중심으로 운영 중인 75개 홍수특보지점을 지류·지천을 포함한 223개 지점으로 대폭 확대함에 따라 다수지점에 홍수특보를 신속하게 발령 및 전달하기 위해 홍수특보 발령 기준과 서식을 개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홍수특보 발령 기준 개선(안 별표1)

하천수위가 급격히 상승할 우려가 있는 등 급박한 상황에서는 유역 면적에 제한 없이 홍수주의보를 거치지 않고 바로 홍수경보를 발령할 수 있도록 개선

나. 홍수발령 서식 개선(안 별지 1,2,3호 서식)

기존 한 지점씩 홍수특보를 발령하도록 구성된 홍수특보 발령서, 변경 발령서 및 해제발령서 서식을 한 지점 또는 다수지점에 동시 발령할 수 있도록 개선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부처협의 완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2. 1.~3. 12)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 없음.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비고 제2호 중 “홍수특보지점 상류의 유역면적이 1천1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제1호·제2호”를 “제1호·제2호”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홍수특보(홍수주의보, 홍수경보) 발령서

홍수특보 제 ()호

발령일시 : 년 월 일 시 분

발령자 : (서명 또는 인)

하천의 수위가 계속 상승하여 아래와 같이 홍수특보를 발령하오니 해당 지역 주민들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수특보 발령 내용>

지점	홍수특보	(주의보·경보) 수위 도달 일시	해당하천 (국가·지방)	해당지역

※참 고

[illegible]

※ 홍수특보지점별 수위 변동상황은 ○○○홍수통제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수특보(홍수주의보, 홍수경보) 변경발령서

홍수특보 제 ()호

발령일시 : 년 월 일 시 분
발령자 : (서명 또는 인)

홍수특보를 아래와 같이 변경 발령하오니 해당 지역 주민들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수특보 변경발령 내용>

지점	홍수특보		(주의보·경보) 수위 도달 일시	해당하천 (국가·지방)	해당 지역
	변경 전	변경 후			

※참 고

지점	홍수주의보 기준수위		홍수경보 기준수위		계획 홍수위		제방고	
	수위표 기준 (m)	해발 기준 (EL.m)	수위표 기준 (m)	해발 기준 (EL.m)	수위표 기준 (m)	해발 기준 (EL.m)	수위표 기준 (m)	해발 기준 (EL.m)

※ 홍수특보지점별 수위 변동상황은 ○○○홍수통제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수특보(홍수주의보, 홍수경보) 해제발령서

홍수특보 제 ()호

해제일시 : 년 월 일 시 분

해 제 자 : (서명 또는 인)

하천의 수위가 계속 하강하여 홍수특보를 아래와 같이 해제합니다.

<홍수특보 해제발령 내용>

지 점	해제 전 홍수특보	해당 하천 (국가·지방)	해당 지역

※참 고

[illegible]

※ 홍수특보지점별 수위 변동상황은 ○○○홍수통제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